

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391/4 / 전송 731-6790

문서번호 주개30321- 44

시행일자 1992. 11. 16.

(경유)

수신 각 안 참조

참조

취급		시	장
보존			
주택국장	전결		
주택개량과장		법무담당관 심사필 (고시안심사)	
개량1계장		협조봉제관 행정	
기안	구 현 모		협조

제목 도시계획 (주택개량제개발구역) 변경결정고시

(제 1 안) 내부결재

1. 건설부고시 제470호 (73.12.1)로 구역결정된 봉천제2 주택개량제개발구역의 일부추가된 내용을 도시계획법 제12조 (도시계획의 결정)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(고시)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(권한의 위임)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관보에 고시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. 고시안 1부

2. 주택개량제개발구역 변경결정도서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총무처장관

제목 관보 게재의뢰

1. 아래와 같이 관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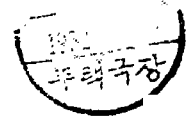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 (주택개량제개발구역) 변경결정

다. 법규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

첨부 1. 고시문 차본 2부. 끝.

서울특별시 장



(제 3 안)

수신 건설부장관

참조 주택개발과장

제목 도시계획 (주택개량재개발구역) 변경결정고시(보고)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봉천제2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3제12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고시하였기 그 처리내용을 보고합니다.

첨부 1. 고시문 사본 1부

2.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도서 1부. 곱.

서울특별시장

(제 4 안)

수신 관악구청장

참조 주택과장

제목 도시계획 (주택개량재개발구역) 변경결정고시 (통보)

1. 봉천제2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고시하였기 그 내용을 통보하니

2.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증명발급등 도시계획 관련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.

3. 지적고시에 필요한 지적도 (지적과 원본대조필) 10부를 제출할 것.

4. 재개발사업계획결정(안)은 다음에 의거 작성 제출하도록 하기 바람.

가. 도시경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시 도경30420-110 (91.12.26)호에 의거 작성 제출할 것.

나. 우리시 주개30420-1611(31.10.15)에 의거 귀구에 설치된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안을 제출토록 할 것.

다.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 단지과 별개의 단지로 밀지를 분할하여 공공도로에 접하도록 배치하고 공급시설 체계도 완전히 분리하여 별개의 단지로 관리되도록 검토할 것.



라. 아파트단지외 부대복리시설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(대통령령) 및 동규칙 (건설부령)을 적용하여 단지내에 별도 배치되도록 검토할 것.

- 첨부 1. 고. 건. 본 2부
- 2. 주택개량개발구역 변경결정도서 2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5 안)

수신처 서울특별시

제목 도시계획(주택개량개발구역) 변경결정고시(통보)

1. 본안(주택개량개발구역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(별첨내용과 같이 변경결정고시)을 통보합니다.

첨부 1. 고. 건. 본 1부

2. 주택개량개발구역 변경결정도서 1부. 끝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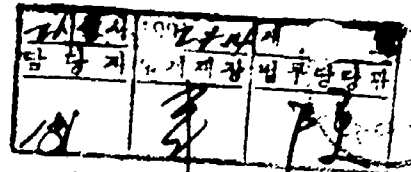
주택개량과장

수신처 도시계획과, 시설계획과장, 3원과장

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2- 15 호

고 시 단



봉천제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 결정

1. 건설부고시 제470호 (73.12.1)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247호 (90.5.2)로 구역추가된 봉천제2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2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,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처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관악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민에게 보입니다.

1992. 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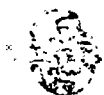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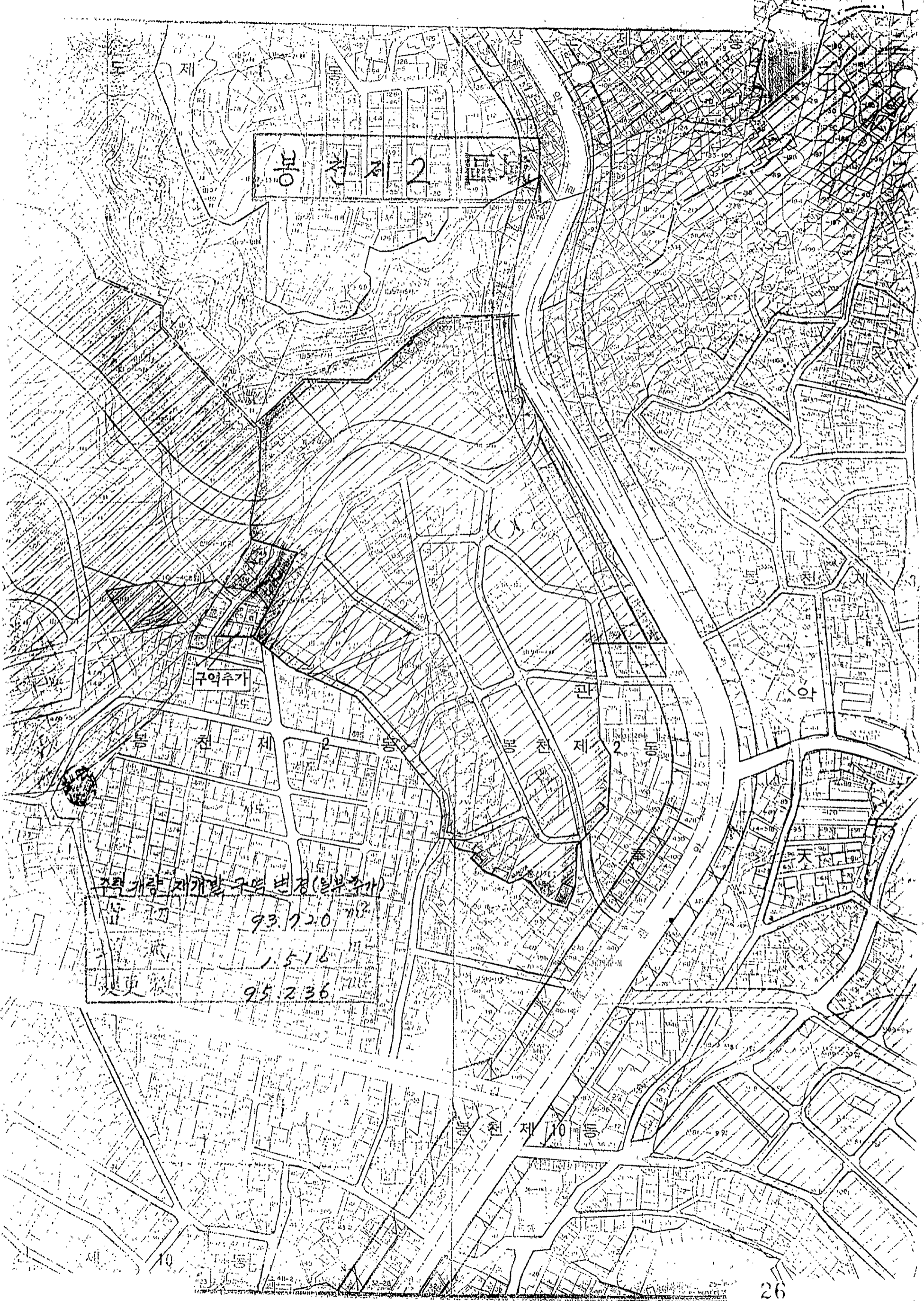
가.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조서

구역명	위 치	면 적 (m ²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 후	
봉천제2	관악구 봉천동 산98-1입대	93,720	1,552	95,272	일부추가 및 단순면적정정

나. 구역내 상도근린공원 : 변경없음 (존치)

다. 관계도서 :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관악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
비치된 도서와 같음





봉천제2구역

구역추가

주요개량재개발구역변경(일부추가)

상 93.720
 지 1.516
 토 95.236

봉천제10구역